

□ 개정내용

- ① 산업단지의 지역 고용 창출 기여, 개별 공장의 사회문제 차단 등을 고려 산업단지 관련 감면을 3년 연장
- 국가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지역을 위주로 산업단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감면율 재설계

감면대상	지역 구분	취득세		재산세	
		개정	개정후	개정	개정후
시행자	수도권	35%	15%	35%	15%
	비수도권		35%	60%	50%
	인구감소지역*		50%		60%
입주기업	수도권	50%	35%	35%	35%
	비수도권		50%	75%	60%
	인구감소지역*		75%		75%

* 수도권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개정 전에는 수도권 지역에 해당

- ② 시행자의 분양·임대용 건축물의 경우 무기한 재산세 감면 대상이었으나
- 분양·임대용 토지 및 직접사용 부동산과 같이 5년간 감면 기한 설정
감면 형평성 도모

※ 산업단지 감면 항변경 사항 정리

구분	개정 전	구분	개정 후
시행자	① 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	시행자	① 산업단지 조성
	② 분양·임대		② 산업단지 조성 사후관리
	③ 직접사용		③ 분양·임대
입주기업	④ 산업용 건축물 및 토지	입주기업	④ 직접사용
	⑤ 사후관리		⑤ 산업용 건축물 및 토지
-	⑥ (삭제)	-	⑥ 취득세 조례 규정
	⑦ (삭제)		⑦ 사후관리
입주기업	⑧ 취득세 조례 규정	-	⑧ 중과세 제외
	⑨ 중과세 제외		⑨ (삭제)